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7895
----------	-------

제안연월일 : 2026. 3. .

제안자 : 교육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가. 상정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유아 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6049호	조정훈의원	2024.11.29.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5.2.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제11525호	백승아의원	2025.7.17.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5.9.2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제13758호	김문수의원	2025.10.28.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2025.12.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나.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26.)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6. 3. 10.)는 이상 3건

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 행위로부터의 교원 보호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유치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또한 「학교보건법」 및 「학교급식법」에 따라 유치원에는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나, 「유아교육법」은 교사의 종류를 정교사와 준교사로만 구분하고 교사의 자격 요건도 정교사와 준교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유치원 교사의 종류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추가하고, 그 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또한 최근 유아 단계에서 조기 사교육이 확산되면서 유아의 발달을 저해하고, 가계 사교육비 부담 가중, 교육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교육부장관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실시와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영유아기 발달을 도모하고 유아교육 정책의 합리성·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교육부장관은 유치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9조의9제1항 신설)
- 나. 교육감은 유치원 민원을 처리하는 교원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9조의9제2항 신설)
- 다. 교육부장관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교육 실시 및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6 신설)
- 라. 교원의 자격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자격기준을 추가함(안 제22조제2항 및 별표 2).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9(유치원 민원 처리 관련 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원장이 유치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2.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전자적으로 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3.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유치원 민원을 처리하는 교원 및 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2. 제1항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세부지원 방안
3. 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③ 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

항을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4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호자는 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의5를 제21조의6으로 하고, 제2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5(유아 사교육비 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교육 실시 및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정교사(1급·2급)·준교사”를 “정교사(1급·2급), 준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한다.

별표 2의 준교사란 다음에 보건교사(1급)·보건교사(2급)·영양교사(1급) 및 영양교사(2급)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건교사 (1급)	1.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보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보건교사 (2급)	1. 대학·산업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2. 전문대학의 간호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영양교사 (1급)	1.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영양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영양교사 (2급)	1. 대학·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2.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9, 제21조의3제3항, 제21조의4제4항 및 제21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제3항 및 「학교급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배치되어 근무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경력은 각각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건교사 및 영양

교사의 경력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초·중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또는 「초·중등교육법」”으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u>제19조의9(유치원 민원 처리 관련 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원장이 유치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u></li> <li><u>2.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전자적으로 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u></li> <li><u>3.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u></li> <li><u>4. 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u></li> </ol> <p><u>② 교육감은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유치원 민원을 처리하는 교원 및 직원 등에 대한 보호</u></li> </ol>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 ①·② (생략)

<신설>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① ~ ③ (생략)

<신설>

<신설>

방안

2. 제1항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세부지원 방안

3. 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

③ 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호자는 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의5(유아 사교육비 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의 건전

<p>제21조의5(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생략)</p> <p>제22조(교원의 자격) ① (생략)</p> <p>② 교사는 <u>정교사(1급·2급)·준교사</u>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p> <p>③ (생략)</p>	<p><u>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교육 실시 및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u></p> <p>② <u>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③ <u>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21조의6(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현행 제21조의5와 같음)</p> <p>제22조(교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정교사(1급·2급), 준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u>----- ----- ----- ----- -----.</p> <p>③ (현행과 같음)</p>
--	---